

TIPLONews 한국어본

2024 년 7 월호(K299)

이달의 주제

K240701Y1

01 「전리심사기준」 제 2 편 특허의 실체심사 제 1 장, 제 3 장, 제 11 장, 제 14 장 및 제 5 편 무효심판의 심리 제 1 장을 수정, 2024 년 7 월 1 일부터 적용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¹⁾은 「전리²⁾심사기준」의 제 2 편 특허의 실체심사 제 1 장, 제 3 장, 제 11 장, 제 14 장 및 제 5 편 무효심판의 심리 제 1 장을 수정하고, 수정된 심사기준은 2024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된다고 공고하였다.

관련 법규의 수정에 맞추어 심사에 있어서의 실무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견해를 일치시키고 심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기준의 각 장절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심사의 원칙 및 사례를 추가하고, 심사기준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본문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수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제 2 편 제 1 장 설명서, 전리 출원 범위, 요약 및 도식
 - 1.3.1 실시가능요건 단락에서 배열표의 전자파일을 첨부한다는 문구를 수정하고, 전리법 시행세칙 제 17 조 제 7 항의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2. 제 2 편 제 3 장 전리 요건
 - 2.6.4 신규성 상실의 판단기준 단락에서 사례 1 을 추가하고, 신규성을 상실했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 제 2 편 제 11 장 전리권 기간의 연장

농업위원회가 농업부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본 장 전체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3.1.3.1.1 의약품의 국내외 임상시험기간 단락부분에서 제 (2)에 기재되어 있는 국외 임상시험보고서는 ICH 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괄호로 표기되어 있는 ICH 의 영어 풀네임을 없애고, 현재의 ICH 조직의 영어 명칭으로 수정하였다.

4. 제 2 편 제 14 장 생물 관련 발명

전리법 시행세칙 제 17 조 제 7 항의 내용 및 지혜재산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WIPO 표준 ST.26 에 준거하여 4.1 및 4.3 단락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4.3.2 배열표 자료 첨부와 관련한 단락에서, 출원이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에 첨부되는 배열표는 WIPO ST.26 표준에 준거한 XML 형식의 전자파일이어야 하며, 출원서류가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 서면문서의 배열표는 WIPO ST.26 표준에 준거한 것이어야 하며, WIPO ST.26 표준에 준거한 XML 형식의 전자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음이 설명되어 있다.

5. 제 5 편 제 1 장 전리권의 무효 심판

2.1.2 이해관계자 관련 문단에서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또한 이해관계자의 심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도로 조사하여 형식상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9. 무효심판청구와 전리권 침해소송의 관계 관련 문단에서는 지혜재산 사건심리법의 제 17 조 원문이 제 44 조로 개정되어, 이미 지혜재산국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별도로 전리 주무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가 보충, 수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 및 그 취지의 설명에 맞추어 심사기준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

6. 기타 수정내용

법률 조항의 내용에 따라 문자 수정 및 오류 수정을 포함한다.

(2024.07)

역주:

- 1)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
- 2) 전리(專利)는 대만용어 專利에 대한 번역으로, 한국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한다. 그 종류에 發明專利(특허권 상당), 新型專利(실용신안권 상당), 設計專利(디자인권 상당)가 있다. 한국은 산업재산권에 상표권을 포함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상표권이 별도로 분류, 관리된다.

02 상표등록출원 가속심사 제도 시작, 신속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활용 가능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가속심사¹⁾제도」가 2024년 5월 1일 정식으로 운용을 개시하여, 상표등록을 서두르는 출원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지혜재산국에 의하면, 가속심사 제도에 해당하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하고있다; 첫 번째가 곧바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 즉 「긴급성」이 있는 것으로, 업자는 우선 심사의 신청시에 서두를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용자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가속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별도로 가속 심사비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가속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가속심사 신청이 접수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 통지가 나오지만, 개별 안건에서 심사 과정에서 보정 통지 또는 심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속심사의 이점에 영향을 미쳐 단기간에 심사 결과를 낼 수 없기도 하다.

상표등록출원의 가속심사 신청 요건과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최초 심사결과 통보가 나오기 전에, 출원인이 바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출원과 관련한 모든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 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일부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 상업상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출원 상표를 제삼자가 미동의하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제삼자가 사용권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이미 판매 또는 박람회 참가등이 기획하고 있을 때 등, 이런 경우는, 가속 심사 신청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현재 가속심사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출원 안건 중, 가속심사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첫번째 안건이 완전히 등록을 마쳤다. 이 안건을 예로 들어 보면, 2024년 3월 1일에 상표등록출원이 이루어진 후, 제 3자 또한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요청하고 있기에, 즉시 권리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2024년 6월 4일에 가속심사 신청을 제출하였고, 한 분류당 대만화폐

6000 원의 가속심사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상표사용 허락계약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심사한 결과, 상표를 등록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서, 2024년 6월 13일에 승인심사를 마치고 등록 인정서를 발급하였다. 현재의 상표 등록 심사는 최초통지기간까지의 평균 기간이 약 6.2 개월이고, 최종 처분까지의 평균 기간이 약 7.5 개월인 점과 고려하면, 가속심사는 출원인에게 있어서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 전략책정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지혜재산국에서는 단기간내에 심사결과를 낼수 없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전통적 상표 타입의 출원; 상표가 쟁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의 명칭이 포함하는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등, 통상 심사 과정에 있어 보정 또는 심사의 유예가 필요하고, 가속 심사의 이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등, 출원인은 가속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출원 안건에 상술의 상황이 있는가를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원상표의 도안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완전히 동일해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가속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나아가 출원인은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여, 선출원 또는 선등록의 상표에 저촉될 가능성을 줄이고, 우선 심사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속 심사를 신청한 후 심사를 통해 가속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가속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대만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 순으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상표등록 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사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 발전과 민중의 권리 보호라고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상표법을 수정해 가속 심사 제도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상표등록출원인이 곧바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반 출원 안건의 심사일정을 압박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가속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상표등록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혜재산국에서는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출원인에게 가속심사 제도의 활용을 권유하고 있다. (2024.06)

역주:

- 1) 가속심사는 원문에서의 加速審査를 번역한 것으로, 한국의 우선심사에 해당한다.

TIPLO
Attorneys-at-Law

K240531Y3

03 웹크롤링(Web Crawling) 기술로 스포츠 경기 영상의 신호를 절취한 불법 도박사이트, 대만화폐 8억 3000만원 규모 권리 침해

대만 형사경찰국 통신수사대는 스포츠 경기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불법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는 것 외에도 웹 크롤링¹⁾ 기술을 이용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신호원을 빼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은 홍(洪)씨 엔지니어 등 18 명을 체포해 송치했으며, 중화직업야구연맹²⁾ TV 및 ELTA³⁾ TV 등 스트리밍 영상서비스(OTT) 업자들은 대만화폐 8억 3000만원 이상의 침해액을 청구하였다.

통신수사대는 이 불법 도박 사이트는 기존의 인터넷 도박 운영 방식과 달리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베팅하며 도박을 하는 방법 외에,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고, 도박꾼은 경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베팅(속칭, 굴리기)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사이트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23년 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7일 사이에 신호 절취의 행동 모델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역탐지의 추적 기술을 사용해, 절취된 신호를 발신한 컴퓨터의 장소를 확인했다. 경찰은 대만 중부 타이중(台中)시 베이툰(北屯)구에 위치한 컴퓨터실 2 곳을 차례로 압수수색하여, 현금 대만화폐 21만원과 서버 등 설비를 압류하였고, 동범죄 그룹의 책임자인 우(吳)씨 및 시스템의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홍(洪)씨 등 18 명을 형법의 도박개장죄, 저작권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타이중(台中) 지방검찰서에 조사하기 위해 이송했다.(2024.05)

역주:

- 1) 원문은 網路爬蟲으로 웹 크롤링(Web Crawling)이라 번역되며, 웹 크롤링(Web Crawling)이란 웹사이트,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 2) 중국어명 中華職業棒球大聯盟, 영어명 Chi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 CPBL (중화직업야구연맹); 대만내에서는 한국의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상당하는 조직

- 3) 중국어명 愛爾達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ELTA Technology (ELTA)
- 4) 굴리기는 원문 走地를 의역한 것으로, 도박에서 시합의 생중계를 보면서 계속 베팅하는 것을 지칭한다.



대만 하이테크 산업 뉴스

K240702Y5

01 Innolux 의 계열회사인 PanelSemi, 일본 NGK 와 협력, 하이브리드 회로기판 공동개발

Innolux¹⁾의 계열사인 PanelSemi²⁾는 2024 년 7 월 2 일 일본 NGK Insulators³⁾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양측은 박막 트랜지스터와 세라믹 기판이 통합된 하이브리드 회로기판을 공동 개발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하기로 하였다.

PanelSemi 의 설명에 의하면, NGK Insulators 의 세라믹 기술과 그들의 제품을 이용하여 박막 LED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모듈 혼합기판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NGK Insulators 는 PanelSemi 의 박막 트랜지스터 회로 기술을 이용하여 세라믹 제품의 기능과 가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PanelSemi 는 박막 트랜지스터 회로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구부릴수 있으며, 초박형, 경량화, 저전력, 고휘도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얇은 필름 위에 미세한 배선과 기능성 회로를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소재를 결합해 하이브리드 회로 기판을 만들 수도 있다. (2024.07)

역주:

- 1) 중국어명 群創光電股份有限公司, 영어명 Innolux Corporation (Innolux)
- 2) 중국어명 方略電子股份有限公司, 영어명 PanelSemi Corporation (PanelSemi)
- 3) 원문 회사명 日本碍子株式會社, 영어명 NGK Insulators, Ltd. (NGK Insulators)